

■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

제1조(약관의 적용)

퇴직연금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예금과목)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(가입대상)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.

제4조(계약기간)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합니다.

제5조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.

제6조(재예치)

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

1.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되며,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

2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(기업형) 퇴직연금(IRP)

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(다만,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11일까지 재예치 됩니다.)

2.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관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7조(이자율의 적용)

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재예치일을 이자율 결정일로 합니다. 단, 재예치일 및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당초 약정이율에 휴일 일수만큼 더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이자율 결정일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을

적용합니다.

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8조(중도해지 이자율)

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

2.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
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나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
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.

다.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
(1) 가입자 본인

(2) 가입자의 배우자

(3)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(「소득세법」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)

라.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마.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바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3.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

가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

나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
다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
- 라. 수탁자의 사임
- 마. 가입자의 사망
- 4.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
 - 가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 - 나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5. 제주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

※ 특별 중도해지이자율

- 1개월 미만의 경우 : 일반중도해지 이자율
-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: 가입 및 재예치 당시 3개월 금리
-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: 가입 및 재예치 당시 6개월 금리
- 1년 이상의 경우 :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고시 이자율

제9조(일부해지)

-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자동만기 연장된 경우에는 각 연장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
-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전 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
 - 1.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
 - 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
- ③ 만기일전에 일부해지하는 경우 일부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
제10조(거래제한)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

제11조(예금자 보호)

-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B)
 -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 및 개인형(기업형) 퇴직연금(IRP)

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
이 약관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개정 특약은 2016.03.23부터 시행하며,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
2. 시행일 : 이 개정 특약은 2021.04.08부터 시행하며,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
3. 시행일 : 이 개정 특약은 2023.07.12부터 시행하며,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